

## 첨부(1)

### 서울교통공사 기술자 사후 정산 문제 민원서류 내용

#### 1. 현황 및 실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표준적인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서를 정하고 이를 2018년도에 발주한 지하철 지상 및 지하 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서 제1장 9. 과업의 특수조건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본과업의 외업인원(기술자+보조인부)은 「정액적산방식」으로 작성되었으나, 과업이 완료된 후에는 「실투입 인력정산방식」으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외업인력을 현저히 절감, 발주기관에서 기술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를 일자별로 제출  
나. 외업인력 정산은 고급기술자 인원으로 환산하여 정산합니다.

이 특수조건을 이유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현장감독자들은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기술자 및 보조인부의 인원을 모두 참여할 것을 감독하고 있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산감액 한다고 하여 진단회사들은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같은 부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계약관리에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기술자나 보통인부의 인력을 모두 나오라고** 감독하는 일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한국철도공사와 같이 인부임이나 기타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것은 아는 지 업체의 투입인력이 실제 계상인력보다 못 미친 경우에도 정산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 정부계약의 원칙과 계약내용

서울교통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계약의 원칙인 신의성실원칙과 부당특약 금지의 원칙(지방계약법 제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현장이나 개발시제품과 같이 계약의 성질상 입찰이나 계약 체결 시점에서 계약목적물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산계약 (지방계약법 제27조)을 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외국의 첨단제품 수입이나 제작에 장기 소요되는 특수 선박 등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계약목적물을 확정하여 총액으로 계약체결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총액·확정계약에서는 계약목적물인 설계서나 제품설명서, 과업지시서등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여부를 감독하거나 검사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인 인력이나 기계사용, 기타 경비 등의 산출 내역서에 의하여 감독하고 인력이나 기계사용 등에 의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상호 대등한 입장이라면 그 계약자체가 비능률 등 문제점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의 인력이나 기계사용, 기타 경비 등을 무한정 투입하여 대금을 더 받으려 할 것이며 만약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인력이나 기계사용 등의 경비보다 초과되는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당 특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총액확정 계약을 사후정산 하는 것은 정부계약 관련 법령상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입찰은 적격심사입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방식에 의하며 발주관서에서는 시설물안전법제11조 등에 의한 정밀안

전점검 대상시설물이 확정합니다. 이 시설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등에 의한 진단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과업내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기초조사 금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에 의하고 있습니다.

산출된 예정가격기초조사 금액은 계약금액 심사를 거쳐 상당한 금액(통상 10-15% 삭감)을 조정한 후 예비가격을 마련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부치게 되며 이에 비해 입찰참가자 들은 대상시설물과 과업내용을 보고 당해회사에서 보유한 기술 인력이나 소요되는 경비 등을 추산하여 주어진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면 총액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됩니다.

### **3.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실투입 인력정산 방식 등의 당부**

서울교통공사의 정밀안전진단 계약은 국토교통부의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고 총액에 의하여 입찰하는 확정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시에는 국토교통부의 대가기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예정가격을 정하면서 외업인원(기술자+보조인부)은 「정액적산방식」으로 작성하여 총액으로 입찰에 부쳐 계약이 확정된 것이 명백하고 이 계약은 입찰공고나 낙찰당시 입찰대상이 되는 예정가격 금액의 비목이 확정되지 않아 사후에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의 계약이 아님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리 총액·확정계약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실 투입 인력정산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부계약법령이나 제도에 전혀 무지하고 갑질을 하기 위한 부당한 조항이어서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실 투입 인력정산방식으로 전환하면서도 더 투입된 인력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지방

계약법의 신의성실 원칙에 부당특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는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같은 총액·확정계약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체결한 각종 건설공사에서는 이러한 조건은 부치지 않고 있고 붙일 수도 없습니다.

#### **4. 진정 요청사항**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후 실투입 인력 정산 조건은 성실의 원칙과 부당특약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감독하면서 기술자의 현장 참여를 촉구하거나 정산감액 등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갑질인 무효인 조건을 입찰조건으로 하고 계약하는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2)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I·SEOUL·U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06367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 (수서동))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총액계약의 사후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귀 협회에서 건의해 주신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용역계약을 확정(총액)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정산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 공고 및 계약 특수조건 등에 정산 항목을 명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각 기관 및 부서에 안내한 바 있으나, 일부 기관 및 부서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서울시 각 기관 및 부서에 해당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주무관 이지숙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03/19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14328 ( 2019.3.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부분공개(6)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I·SEOUL·U  
11월 1일 서울

## 서울특별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총액계약의 사후 정산문제와 관련하여 귀 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용역계약을 총액계약으로 체결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정산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 공고 및 계약 특수조건 등에 정산 항목을 명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각 기관 및 부서에 안내한 바 있으나, 일부 기관 및 부서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서울시 산하 기관에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 서울특별시

주무관 이지숙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04/11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199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부분공개(6)

이지숙 재무과 2019-04-12 12:18:08

### 첨부(3)

## 서울교통공사 2019년 시행 과업의 특수조건

### 과업내용서 제1장 일반사항

#### 9. 과업의 특수조건

가. 본 과업의 외업 인력(기술자+보조인부) 및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는 『정액적산방식』으로 작성되었으나, 과업이 완료된 후에는 『실 투입 인력정산방식』으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 과업수행 계획서에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를 일자별로 제출  
나. 외업 인력 정산은 고급기술자 인원으로 환산하여 정산합니다.

#### 계약특수조건

##### 제3조(실투입 외업인력 정산)

① 본 과업의 외업인력(기술자,보조인부,철도운행안전관리자)은 『정액적산방식』으로 작성하였으나, 과업이 완료된 후에는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을 기초로 한 『실투입 인력정산방식』으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정산한다.

② 정산시 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하여 정산한다.

#### 첨부(4)

### 한국철도공사의 총액계약 조치결과

#### 1. 현황 및 실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면서 표준적인 설계서를 마련하고 이 내용에 과업내용서, 과업의 특별지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발주한 모든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 및 계약에서 계약의 일부가 된 설계서 중에서 설계변경 및 사후정산 관련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계설명서

6. 기타사항 : 직접경비로 계상된 소요비용은 준공시 정산(증빙제출)

#### 일반과업내용서

#### 12. 설계변경 및 사후정산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에 의거 실제 용역에 투입된 인공 및 참여기술자가 고급기술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 당시 지급된 대가에서 실제 투입한 결과에 따라 정산 감액조치 할 수 있으며, 초과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아. 과업 중 철도운영안전관리자 등의 부대비는 실제 투입한 결과에 따라 정산하여 당초 계약금액보다 적을 경우 감액조치 할 수 있으며, 초과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1) 철도운영 안전관리자 참여일수는 철도운영 안전협약서에 의거 산정 후 실비 정산(지급)처리토록 한다.

2) 열차감시자 참여일수는 안전작업계획서에 의거 산정 후 실비 정산(지급) 처리토록 한다.

차 1), 2)항 및 그 외 부대비에 대하여 관련서류 증빙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 2. 조치결과

이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감사원에  
서는 2019.5.8. 대전사무소-1316호 감사제보 접수처리통보(제2019-민원 02738  
호로)

“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이미 2019년 정산관련 조건을 삭제하고 다만, 철도  
안전관리인력은 공사 현장 여건 시에 따라 준공 시 실제 근로일수로 정산하  
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시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실제 2019년도 이후 발주 분은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자나 인부 등의 정산관련 조건은 모두 삭제하였으나 표준폼셈이나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을 정할 수도 없으며 열차 운행 등 작업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부 공종인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와 신호수 등의 인력은 투입  
인력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협  
회에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첨부 : 감사원 감사제보 접수처리 통보 공문 사본 1부. 끝.



"신뢰받는 감사원, 국민과 함께 합니다."

# 감사원

바른금식  
바른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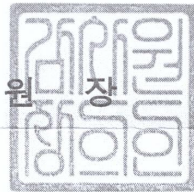
수신 박주경 귀하 (우06367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1828호(수서동, 로즈데일빌딩))

(경유)

제목 감사제보 접수처리 통보 (제2019-민원-02738호)

1. 감사원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2019. 4. 4.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제보(분류번호 제2019-민원-02738호)를 검토한 결과,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미 2019. 3월부터 발주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설계서에 ① 직접경비와 직접인건비 정산관련 조건을 삭제하였고 ② 철도 안전관리 인력은 공사 현장여건에 따라 준공 시 실제 근로일수로 정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감사원장



부감사관

김정은

감사관

임세중

★소장

전결 2019.5.8.

권오복

협조자

시행 대전사무소-1316

(2019. 5. 8.)

접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18층 (둔산동)

/ <http://www.bai.go.kr>

전화번호 042-481-6731

팩스번호 042-481-6747

/ [kim7195@korea.kr](mailto:kim7195@korea.kr)

/ 비공개(5,6)

